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의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가소○○○ 대여금청 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2. 귀원의 20〇〇카기〇〇〇 강제집행정지명령은 이를 인가한다.
 - (이미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었던 경우의 문구임)
 - ※ 미리 강제집행정지명령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기재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또는 이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고 기재함.
-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가 없으면 원고가 승소하여도 별 소득이 없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소○○○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금 1,500만원의 승소판결(이 사건 집행권원)을 얻어서, 이에 근거 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 ○. ○.에 강제집행개시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바,
- 2. 원고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20○○. ○. ○○.에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채무원리금 1,650만원과 집행비용을 부담하고, 대금 4,500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대금에서 이 사건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 ○○. ○.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액(원금 1,500만원, 이자 금 50만원, 집행비용 금 100만원) 합계 금 1,650만원을 변제하고자 피고를 찾아갔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욕심이 나서 수령을 거절하고 아예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원리금을 채무자 ●●● 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변제하고자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금 제○○호로 금 1,65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는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고서는 강제경매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등본(피고의 ◉◉◉에 대한 것)

1. 갑 제2호증 강제경매개시결정등본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

1. 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5호증 영수증

1. 갑 제6호증 변제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000.00 m²

2층 000.00m²

3층 000.00m²

4층 000.00m²

5층 000.00 m²

지층 000.00 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OO.OOm²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집행권원에 따라 다름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
제출법원		제출기간	
	(※ 아래 참조) 하는 동안 하는 동안		
│ │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44조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ㅇㅇㅇ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		
7] []	면 구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		
	86조) 제2항에 따라 제48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같		
	은 법 제5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		
	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		
	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 기판력이 생기지	l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		
	소송법 제521조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		
기 타	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임(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		
	73480 판결).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		
	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		
	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		
	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이 없		
	음(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		
	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		
	무자가 채무명의(지뱅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집행		
	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현행 민	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

- 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자가 채무명의(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 조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됨(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기하여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집행비용까지 공탁하지 않은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 ·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집행권원인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전)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선고 2006다23138 판결).
- · 그러나 위와 같은 기판력에 대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 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터잡아 지급한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변제효과가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뒤에 변제한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 ·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886 판결).
- ※ 집행권원 및 관할{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專屬管轄)임(민사집행법 제21조)}
 -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

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명' 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 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 6. 채권표 : 확정판결에 준하여 그 파산채권표가 성립한 지방법원(파산법 제259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